

논 단

UR 農產物協商과 우리의 對應方案

李 載 玉\*

- I. 序 論
- II. UR 農產物協商的 概況
- III. 農產物協商的 現況
- IV. 向後 協商的 展望과 韓國農業에 미치는 影響
- V. 對應方案
- VI. 要約 및 結論

I. 序 論

현재 韓國 農業은 전환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하겠다.

급속한 産業化 過程에서 농업은 이미 그 매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內外指向의인 공업 위주 輸出主導型的 不均衡 經濟政策의 시행으로 都農間의 所得隔差는 더욱 확대되었다. 農漁民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과도한 離農·脫農을 유발하여 대도시의 住宅, 交通, 公害問題 등이 심각해지고, 이것은 다시 經濟全體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농촌인구는 극도로 노령화되어 農業의 代를 이을 후계자가 없으므로 모종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産業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요즈음이다. 이 모든 것들은 그동안 所得再分配를 위한

社會福祉政策의 소홀에서도 기인하였겠지만 先進國들이 오랜 동안 힘써 왔던 農業下部構造改善과 投資가 미흡하여 아직도 韓國 農業이 絶對劣位와 低生産性的 農業生産 形態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상가상으로 1980년대를 전후한 世界 貿易 與件의 變化와 美國의 經濟事情 惡化 등 우리 농업의 外生的인 요인에 의하여 農產物 輸入開放壓力이 同時多發的으로 고조되고 있다. 즉, 對美 貿易收支黑字의 확대는 美國의 財政赤字·貿易赤字 解消努力과 맞물려 韓美間 通商摩擦과 農產物 市場開放壓力을 초래하였다. 이와 함께 國際收支 與件의 개선과 經濟的 지위 향상으로 포괄적으로 農產物을 輸入制限해 을 수 있었던 根據條項인 GATT 18조 B항을 卒業하게 된 것이다. 한편 1980년대초부터의 世界經濟의 保護主義·地域主義化 경향과 새로운 貿易問題의 해결을 목표로 1987년부터 시작된 UR 協商으로 인하여 農產物市場 開放은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 특히, 금번의 農產物協商은 交易自由化뿐만 아니라 世界 農業의 개혁을 목표로 모든 農業補助金의 減縮 問題까지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아직도 生産基盤이 脆弱한 韓國

\* 研究委員.

農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自由貿易과 交易量 증대가 韓國의 經濟成長을 위하여 여전히 必須的이라면 그에 따른 產業의 構造調整과 손실을 입은 부문에 대한 補完對策도 철저히 시행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UR 農產物協商的 현황을 개관하고, 향후 協商展望, 國內 農業에 미칠 影響, 그리고 對應政策에 관하여 言及하고자 한다.

## II. UR 農產物協商的 概況

### 1. UR 協商的 擡頭背景과 農產物協商

1980년대를 전후하여 世界의 交易秩序는 큰 변화를 통하여 多極化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總生産 規模나 貿易 規模에서 世界經濟의 주도권을 잡아 오던 美國과 EC 주요 국가들의 經濟力은 현저하게 약해진 반면 西獨, 日本, 그리고 아시아 新興工業國들의 經濟成長과 貿易量 증대는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西獨, 日本 등의 貿易收支 黑字는 큰 폭으로 증대한 반면 美國은 財政赤字와 貿易赤字 등의 문제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世界 經濟秩序의 再編過程에서 반작용으로 타나난 것이 地域主義와 保護貿易主義라고 할 수 있는데, EC는 1992년을 목표로 擴大統合을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 등과의 自由貿易協定(Free Trade Agreement)을 이미 추진 또는 계획하에 있는 것이다. 保護主義의 再登場은 戰後 自由貿易에 의한 世界의 經濟發展을 도모하여 왔던 GATT

의 基本原則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움직임으로서 2000년대의 世界貿易을 規範할 새로운 무역 질서의 樹立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루과이 라운드 擡頭背景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제일의 난제로 꼽히고 있는 農產物協商은 그만한 貿易問題를 내포하고 있었다. 1970년대까지의 食糧危機(Food Crisis) 狀況은 1980년대에 와서는 貿易危機(Trade Crisis) 狀況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즉, 1970년대를 食糧이 부족하여 食糧調達이 매우 어려웠던 시대라고 한다면 반대로 1980년대는 세계적으로 과잉생산과 재고누증, 財政支出 擴大, 그리고 농산물 무역분쟁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過剩在庫의 처리를 위해 農產物 輸出國間에 이른바 “輸出補助金 戰爭”이 시작되어 世界 農產物 交易秩序는 크게 왜곡되었다. 세계 농산물 교역 질서의 왜곡에 대한 원인이, 輸出國들은 輸入國의 과도한 수입장벽과 農業保護에 있다고 주장한 반면 輸入國들은 輸出國間的 경쟁적인 輸出補助金 支給에 있다는 엇갈린 해석을 하고 있지만, 농산물 貿易問題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협상에 의하여 世界 農業을 개혁할 필요가 있음에 인식을 같이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특히, 農產物協商이 핵심 협상이 되었던 것은 美國의 財政赤字와 貿易赤字의 해소 노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 미국은 전반적인 세계 농산물 시장의 불황으로 농산물 수출이 부진해지고 막대한 農業補助와 輸出不振 타개를 위한 輸出補助金の 지급으로 농업재정 적자가 누증되자 일면으로는 雙務的인 協商으로 農產物輸入 開放壓力을 貿易相對國에 넘게 되었으며, 또 한편으

로는 큰 協商力을 행사할 수 있는 GATT의 多者間協商에 의하여 세계의 農産物 무역자유화를 주장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그들이 아직도 國際競爭力을 유지하고 있는 農産物, 서비스, 知的所有權 등의 분야에 대한 협상에 초점을 맞추어 協商力을 모으고 있는데, 특히 農産物協商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世界農業의 改革을 통한 公正하고 市場指向的인 農産物 무역체제 수립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 2. 農産物協商의 推移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0년대초부터의 世界 農産物의 구조적인 과잉생산 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이루어짐은 물론

農産物 무역에 대한 GATT의 규율은 工産品 分野와는 달리 많은 예외적인 조치를 두고 있으며, 구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世界 農産物 交易 環境의 변화에 따른 市場秩序의 왜곡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인식도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農産物 交易上 새로운 秩序 確立과 國際貿易의 신분야로 등장한 서비스, 知的所有權 등의 協商을 위해서 GATT 체약국 각료들은 1986년 9월 우루과이 폰타 델 에스테 선언과 함께 동협상의 목적 및 일반원칙 등을 밝힌 폰타 델 에스테 宣言文을 채택하였다. 同宣言文에 나타난 農産物 협상 그룹 및 熱帶商品 협상 그룹의 협상 목적 및 특별 고려사항을 보면 <表 1>과 같다.

表 1 農産物·熱帶產品 그룹의 協商目的 및 特別 考慮事項

區 分	農 産 物 組 團	熱 帶 産 品 組 團
協 商 目 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農産物貿易의 自由化 擴大</li> <li>• 輸出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들이 보다 강화되고 효율화된 GATT 規定 및 원칙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加工, 半加工 등의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熱帶產品 交易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關稅 및 非關稅 조치를 포함한 이들의 완전한 자유화 달성</li> </ul>
特 別 事 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輸入障壁의 緩和를 통한 시장접근 개선</li> <li>• 農産物交易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의 補助金 및 기타 조치의 원인 파악과 이것의 부정적 효과의 점진적 완화를 포함하여 동조치 적용에 관한 법률 강화를 통해 農産物交易의 경쟁조건 개선</li> <li>• 한편 國際協定을 고려하여 農産物에 대한 衛生 및 植物衛生上의 규제 또는 障壁이 農産物交易에 미치는 否定的 效果를 극소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締約國團은 대부분의 개도체약국에 있어 熱帶產品 交易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정하여 동분야 협상의 시한 및 結果 履行에서는 초기에 타결된 협정을 協商의 공식적 종결 이전에도 合議에 따라 暫定的 또는 限定的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協商의 일반원칙을 특별히 고려함.</li> </ul>

폰타 델 에스데 閣僚宣言에 따라 1987년초부터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 農産物協商은 1990년 10월까지 25차에 걸친 公式會議와 食品衛生 및 動植物檢疫, 農業保護測定裝置(AMS) 作業團會議의 수시 개최, 그리고 여러 번에 걸친 輸出入國間 非公式會議가 있었다. 그러나 각국의 특수한 입장과 국내적인 정치·사회적인 민감성 때문에 동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어느 參加國이나 협상의 목표인“農産物交易의 自由化 擴大”에는 공감을 표시하고 있으나 世界 農産物市場의 需給不均衡 및 가격하락 요인에 대한 輸出入國間的 근본적인 시각 차이로 主要 議題인 補助金 감축 및 國境措置 완화 등에 대한 의견 차이를 아직도 좁히지 못했다.

1988년 12월에는 2년 여동안 진행되어 온 UR 農産物協商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의견조정 후 中間合議文을 작성하기 위한 中間評價會議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農産物協商의 目標設定에 있어 農業關聯 補助金の 完全撤廢(Elimination)을 주장하는 미국과 상당한 정도의 감축(Substantial Reduction)을 주장하는 EC와의 대립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후 4개월간의 GATT 중재와 각국의 의견 조정으로 1989년 4월 제네바에서 재개된 貿易協商委員會(TNC)에서 農産物協商의 中間評價 合議文이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UR 農産物協商은 전반기 2년간의 협상을 정리하고 후반기 2년간의 實質協商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中間評價 合議文에서는 農産物協商의 장기목표를 공정하고 市場指向的인 農産物貿易體系를 수립한다는 데에 두고, 이를 위해서 自由貿易原則에 입각한 새로운 GATT 규범을 제정하고 農業保護 및 支持水準을 상당하고 계속적으로

감축(Substantial Progressive Reduction)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中間評價 合議文에서는 合議內容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는 첫째, 각국의 農業支援 및 保護水準을 特定政策 및 措置別로 協商에 의해 삭감해 나가는 방안 둘째, 總量保護測定裝置(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s)<sup>1</sup>에 의해 農業支援 및 保護水準을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방안 셋째, 위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短期目標로써 農業保護 및 지원수준을 현수준에서 凍結(standstill)하자고 되어 있는데, 이는 農業補助金を 상당한 정도로 감축해야 되지만 계속적으로(Progressive)감축하자는 것과 일관성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中間評價 合議原則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農産物交易을 개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1989년말까지 韓國을 포함하여 22개국이 공식입장을 書面으로 표시하고 토론하였으나 대부분의 議題에서 輸出入國間에 異見만 노출되는 결과여서 協商의 進展이 별무하였다. 따라서 1990년초부터는 협상의 촉진을 위해서 가장 이견이 노출되는 國家, 또는 協商 國家間에 非公式會議 위주의 협상을 진행하였다. 6개월간의 非公式協商에서는 GATT 事務局이 작성한 要約表(Synoptic Table)를 중심으로 질의 응답이 있었으며, 각국이 작성한 自問自答書(Auto-Clarification Table)에 대한 討議가 계속되었으나 결국 異見調整에는 실패하였다.

1990년 7월에는 각국의 현격한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協商 妥結時限을 5개월 정도 남겨

<sup>1</sup> 해당 국가의 국내 농업보호 정도를 측정하는 일종의 계수. 여기에는 국내 농업보조뿐만 아니라 무역제한조치도 포함시켜 계산함.

놓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논의되었던 사항을 토대로 議長의 재량하에 合議文 초안을 작성하게 되었다. 議長 草案은 주로 農産物을 수출하는 국가의 입장만이 크게 반영된 방향에서 작성되었던 관계로 1990년 7월의 貿易協商委員會(TNC)에서 다시 異見이 노출되어 향후 협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데에만(a means to intensify the negotiation) 합의하고 추가적인 협상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議長 草案에서는 國別補助金 現況 및 貿易制限措置에 관한 現況表(Country List)와 國別補助金 減縮 및 自由化計劃書(Offer List)를 각각 1990년 10월 1일과 10월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컨트리 리스트와 오퍼 리스트를 기초로 하여 10월, 11월 동안 利害當事國間的 雙務協商을 해 나가며 미합의된 協商原則에 관해서도 논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예정하였던 것이다. 이

렇게 하여 農産物協商을 비롯한 15개분야의 협상은 12월초 브라셀에서 閣僚級 NTC 會議를 개최하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종결짓는다는 계획에 있다.

### Ⅲ. 農産物協商의 現況

#### 1. 爭點別 主要國家의 基本立場

4년여에 걸친 農産物協商에서 주로 論議되었던 事項은 國內農業補助金の 감축, 國境措置의 완화, 輸出補助金の 감축, 動植物 檢疫制度의 개선, 開途國 優待措置, 그리고 農業의 非交易的 考慮事項(NTC: Non-Trade Concerns)<sup>2</sup> 등이다. 이들에 대한 各國의 相異한 立場은 다음과 같다.

#### 가. 國內補助金 減縮

區 分	基 本 立 場
美 國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國內 農業補助金을 信號燈式 接近方式에 따라 區分(撤廢, 減縮, 許容 對象으로)</li> <li>• AMS를 통한 감축</li> <li>• 貿易에 影響을 미치는 農業支援措置의 10년내 철폐</li> <li>• GATT 規程에 撤廢, 許容對象 政策 明示</li> </ul>
케언즈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國의 立場과 유사하나 조건부 許容對象 政策 提示</li> <li>• 캐나다는 TDE<sup>3</sup>를 통한 감축 主張</li> </ul>
E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撤廢對象政策의 설정에 반대</li> <li>• SMU<sup>3</sup>를 통한 補助金 감축</li> <li>• 構造的 過剩, 市場歪曲 品目(穀物, 쌀, 설탕 등)만 감축 대상</li> </ul>
日 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輸出補助金の 우선적인 감축</li> <li>• 農業의 특성, 農業의 構造調整  필요성 考慮</li> <li>• PSE<sup>3</sup>를 통한 감축에 異義 提示(農業政策의 다양한 목표를 반영하지 못함)</li> </ul>

<sup>2</sup> 농업은 경제적 기능 이외에 식량안보, 환경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등 비경제적 내지 비교역적인 역할을 수행해 내고 있다는 주장.

<sup>3</sup> TDE, SMV, PSE는 각각 캐나다·EC·미국이 주장, 제안하고 있는 AMS의 변형된 공식을 지칭함.

## 나. 國境保護措置 緩和

區 分	基 本 立 場
美 國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非關稅措置의 關稅化와 關稅相當額의 감축</li> <li>• 초기 쿼타(initial quota)를 履行期間 동안 점차 확대</li> <li>• 現行 關稅水準의 인하 및 讓許幅 확대</li> </ul>
E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關稅化 범주내에서 再均衡(re-balancing) 주장</li> <li>• 不足拂支給 制度도 關稅化의 대상</li> <li>• 關稅化의 衝擊을 緩和하기 위한 補正要素(corrective factor) 도입</li> </ul>
케언즈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非關稅措置의 關稅化</li> <li>• 關稅 相當額 감축 및 低率의 關稅讓許를 위해 公式 適用 引下</li> <li>• 초기 쿼타의 增量은 美國의 立場과 類似</li> </ul>
日 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原則적으로 關稅化 반대</li> <li>• 國民基礎食品과 GATT 11條 適用對象 品目の 關稅化 困難</li> </ul>
스 위 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TC의 적절한 反應을 전제로 한 關稅化 受容</li> </ul>

## 다. 輸出補助金 減縮

區 分	基 本 立 場
美 國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속한 輸出補助金의 감축</li> <li>• 不足拂支給은 國內補助로 인정</li> <li>• 政府財政支出 또는 補助金 受惠品目の 양으로 撤廢履行의 基準</li> <li>• 食糧援助에 대한 補助金은 撤廢對象에서 제외</li> </ul>
케언즈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輸出補助金의 導入禁止 및 現行 輸出補助金의 10년내 完全撤廢</li> <li>• 輸出補助金의 減縮履行期間에는 噸당 輸出補助金과 補助對象 品目の 양을 同時規制</li> </ul>
E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原則적으로 國內補助, 國境措置, 輸出補助를 포함한 총체적인 감축 주장</li> <li>• 輸出補助金의 撤廢 反對(점진적인 감축)</li> </ul>
日本, 스위스 北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輸出補助金의 撤廢</li> </ul>

## 라. 食品衛生 및 動植物 檢疫

區 分	基 本 立 場
美 國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動植物檢疫에 대한 措置는  충분한 科學的 證據에 立脚해야 함.</li> <li>• CODEX, OIE, IPPC 許可指針  활용</li> <li>• 모든 規程, 措置, 承認事項은 內國民 待遇</li> </ul>
케언즈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動植物檢疫規程이 貿易障壁으로 惡用됨에 憂慮 表明</li> <li>• 規制措置는 危險 許容水準에 의해서 決定</li> </ul>
E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시 國際基準보다  엄격한 基準適用 可能</li> <li>• 疾病 安全地域의 인정</li> </ul>
日本, 北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各國의 衛生 및 地理的 與件, 食生活 慣習의 差異를 考慮하여 規制措置 認定</li> </ul>

마. 開途國 優待措置

區 分	基 本 立 場
美 國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農産物 貿易障壁의 撤廢를 통한 開途國 惠澤 擴大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最低 開途國: 폭넓은 優待措置</li> <li>- 先發 開途國: 經濟的 能力 또는 農業分野의 發展程度에 상응하는 寄與 要求</li> </ul> </li> </ul>
케언즈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開途國의 差別的 優待 認定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履行措置에  필요한 施行期間 延長</li> <li>- 輸出開途國 優待 (對先進國 市場 擴大)</li> <li>- 輸出과 무관한 國內政策과 관련된 政府支援措置 許容</li> <li>- 發展程度에  상응한 開途國의  기여  바람직</li> </ul> </li> </ul>
E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開途國의 發展程度 및 開發의 必要性에 따라 差別的 待遇 許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農業分野가 比較적  발달된 開途國에 開途國 優待原則의  일률적  적용  반대</li> </ul> </li> </ul>
日 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開途國 經濟發展에서 農業 및 農産物貿易의  중요성 認定</li> <li>• 開途國 優待 認定</li> </ul>

바. 農業의 非交易的 考慮事項(NTC)

	日 本	北 歐	스 위 스	韓 國
基本立場	基本食糧의 100% 自給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最小市場 接近 保障</li> <li>• 最小農業 維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最小市場 接近 保障</li> <li>• 基礎食品의 最低 自給維持</li> </ul>
NTC 중 強調事項	食糧安保	環境	食糧安保, 環境, 雇傭 維持	食糧安保, 環境, 雇傭 維持, 地域 均衡개발의 綜合的 考慮
主要關心 品目	쌀	일부 穀物 및 酪農 製品	일부 穀物 및 酪農 製品	多數品目(穀物, 畜産物, 果實, 菜蔬類 등)
NTC의 反映方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國境保護措置의 維持</li> <li>• 生産減縮 및 生産性 向上 誘導로 國內補助金  감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各 協商 양식에  서  적절히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國境保護措置의 維持 단, 最小市場接近 保障</li> <li>• 國內生産性 向上을 통한 支持水準  감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國境保護措置의 維持 단, 最小市場接近 保障</li> <li>• 最低自給率  범위 내 國內保護措置 維持</li> </ul>

2. 우리 나라의 基本立場

우리 나라는 UR 農産物協商의 기본적인 合議事項인 農産物貿易의 自由化에는 원칙적으로 同意하고 있으나 國內農業 與件의 脆弱性으로

인하여 主要 農産物의 保護根據를 確保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農産物의 계속적인 輸入制限 根據의 마련이 어려운 것은 國際社會에서 우리 나라의 특수한 立場과 協商 與件이 불리한 점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

리 나라는 國家 全體的으로 GATT의 交易自由化를 支持해야 할 立場이나 農產物 分野만은 國內農業 保護를 위해 最大한 例外措置를 인정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주장을 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우리 나라의 經濟 發展 水準은 90년대초 先進國으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어 餘他 開途國과의 共同步調를 취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더욱이 UR 農產物協商은 미국, EC 등 輸出 強大國 주도로 推進됨으로써 輸入國 農業에 대한 예외적 保護措置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國內農業 保護를 위해서 農業의 非交易的 考慮事項에 대한 輸入 制限, 開途國 優待措置, 猶豫期間 許容 등에 관한 事項을 끊임없이 주장하여 왔다. 農產物協商에서 우리 나라의 協商目標 및 提案內容은 다음과 같다.

#### 가. 協商目標

- 農產物 輸出國과 輸入國間의 協商利益의 均衡한 반영
- 食糧安保 등 農業의 非交易的 要素를 GATT 規程에 명백히 반영
- 最大한의 農產物 輸入制限 및 農業保護 根據 확보
- 開途國의 構造調整에 필요한 유예기간 및 政策選擇의 彈力性 確保

#### 나. 提案內容

- 農業의 特殊性 및 農산물 交易自由化의 限界인정
- 世界 農產物交易 歪曲에 대한 輸出國 責任 強調
- 食糧安保 및 農業의 非交易的 機能

(NTC) 維持에 필요한 保護措置의 허용  
- 最低自給率 維持 및 最小市場 接近 保障

- 關稅化에 대하여 原則的으로 同意하나 NTC는 제외
- 現行 數量制限 條項인 11條 2(C)條項 運用條件 완화
- 衛生檢疫 規制의 國際機構 適用時 各國의 食慣習, 環境與件, 技術水準의 差異 考慮
- 合議事項 履行時 開途國에 猶豫期間과 自律性 賦與

#### 3. 農產物 그룹 議長 草案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향후 얼마 남지 않은 實質協商의 骨格 내지는 合議原則을 議長의 재량하에 1990년 7월초 作成하여 이에 대한 論議가 進行되었다. 全般的인 討議 雰圍氣는 議長草案이 農產物 輸出國들의 立場만 크게 반영되었다 하여 輸入國들의 반발이 매우 심하였다. 議長草案의 구체적인 내용은 <表 2>와 같다.

議長草案에 대한 論議가 1990년 7월 貿易協商委員會(TNC)에서 있었으나 農產物 輸出國인 미국과 케언즈 그룹은 議長의 合議草案을 協商의 基礎(basis)로 採擇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반면 EC는 그들이 주장해 왔던 補助金의 총체적 감축(global approach), 關稅化 過程에서의 補正要素 사용 등에 관한 언급이 없음을 지적, 議長草案을 단지 協商을 促進시키는 手段(as means to intensity the negotiation)으로 활용한다는 立場을 堅持하였다. 또한 農產物 輸入國인 우리 나라, 日本, 스위스 등은 食糧安保 등 輸入國 立場이 반영되지 않았음에 강력한 異見을 提示하고 主要 品目에 대한 輸入數量 規制와



表 2 議長草案內容

內 容	論 議 動 向
<p>&lt;國內補助金 削減&gt;</p> <p>減縮對象政策</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市場價格支持</li> <li>• 生産者에 대한 直接 支持</li> <li>• 生産要素 및 流通費用  감축</li> </ul>	<p>EC와 輸入國들은 撤廢對象이 없어진 것에 대해 만족, 그러나 한국, 日本, 스위스 등은 NTC 關聯政策이 許容對象으로 考慮되지 않음에 불만</p>
<p>許容對象政策</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一般 서비스</li> <li>• 環境保存</li> <li>• 資源轉換 및 영농포기</li> <li>• 純粹 災害報償, 作物保險</li> <li>• 食糧安保 目的의 在庫管理</li> <li>• 國內食糧援助</li> <li>• 所得保全(income safety net)</li> </ul> <p>減縮方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MS를 통한 감축</li> </ul>	
<p>&lt;國境保護措置 緩和&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非關稅措置의 關稅化</li> <li>• 關稅相當額의 減축</li> <li>• 初期割當量의 賦課 및 점진적인 증대</li> <li>• NTC는 關稅化過程에서 최대한 반영(TE 및 TQ의 調整)</li> <li>• 特別 safeguard 措置는 關稅引下만 許容</li> <li>• 輸入制限 없는 品目은 모두 現行 關稅率로 讓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日本, 스위스는 NTC의 예외가 明示的으로 반영되지 않았음에 불만</li> <li>• EC는 再均衡(rebalancing), 補正要素(corrective factor)가 未反映되었음에 반대</li> <li>• 現行 關稅協商보다 엄격한 提案이라는 점에 多數國 반대</li> </ul>
<p>&lt;輸出補助金 減縮&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國內補助 및 關稅相當額보다 빠른 速度로 減축</li> </ul>	<p>EC는 國家 전체적인 AMS 수준의 總括的 引下(global approach)주장</p>
<p>&lt;其 他&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0년 10월 1일까지 補助金 現況表(country list) 提出 要求</li> </ul>	<p>協商原則의 未合議 상태하에서 補助金 現況表의 제출은 不可하다고 大多數 國家 반대</p>

補助金 支給 許容을 주장하였다. 결국 TNC 會議에서는 議長草案을 향후 協商을 촉진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에만 合議하고 補助金 現況表(country list)와 補助金 減축 및 輸入自由化 計劃書(offer list)를 각각 10월 1일과 10월 15일 까지 제출하기로 요구하였던 것이다.

#### 4. 各國의 보조금 현황표 提出現況

##### 가. 提出現況

議長草案, 즉 協商의 原則에 대한 未合議 狀態하에서의 補助金 現況表와 減縮計劃書의 提出은 마치 規則이 없는 競技와 비슷하다는 論

表 3 主要國의 補助金減縮計劃 및 自由化計劃 內容

	國內補助	國境措置(關稅化)	輸出補助	其他
美 國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1/92년부터 10년간 75% 削減</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關稅相當額(TE)의 1991/92년부터 10년간 75% 削減</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1/92년부터 90% 削減</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開途國優待: 1인당 GNP 기준 履行期間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0달러 이하: 15년</li> <li>- 2,500달러 이하: 12년</li> <li>- 2,500달러 이상: 10년</li> </ul> </li> <li>NTC는 關稅化範圍內에서 受容</li> </ul>
케언즈(캐나다 除外 12個國)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1/92년부터 10년간 75% 削減</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先進國: 1991/92년부터 10년간 75% 削減</li> <li>開途國: 1991/92년부터 10년간 45% 削減</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1/92년부터 10년간 90% 削減</li> </ul>	
카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88년 기준 10년간 50% 削減</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E: 10년간 50% 削減 혹은 10년 후 20% 이하가 되도록 削減</li> <li>GATT 規程 11條 2(c)에 의한 品目: 關稅化제외</li> <li>履行期間은 協商可能</li> </ul>		
日 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86~96년 (10년간) 30% 削減</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殘存輸入制限 品目(쌀 등 9個 品目) 關稅化 受容 不可</li> </ul>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總 AMS는 1988년 實質價格基準으로 1996년까지 凍結</li> <li>1988~96년간 20% 削減</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E 除外品目: 牛乳 및 乳製品, 사슴고기 등</li> <li>牛乳 및 乳製品 중 一部 穀物 등 1991~96기간중 10% 감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6년까지 完全 撤廢</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可變賦課金, corrective factor 反映 主張</li> </ul>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動物, 果菜類는 20% 삭감</li> </ul>		

	國內補助	國境措置(關稅化)	輸出補助	其他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6~96년 기간중 최소 30% 減縮</li> <li>- 50% 水準까지도 削減協商 可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MS 削減目標을 달성할 정도만큼의 削減</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完全撤廢</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開途國 優待</li> <li>- 감축기간</li> <li>장기간 賦與</li> </ul>
남아공화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發展水準을 考慮하여 他國의 이행 정도만큼 1986년 이후 10년간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6년까지 20~30% 減縮</li> <li>• 總保護水準을 1986년 수준에서 凍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一部品目에 한하여는 可變賦課金 또는 國際價格變動效果를 완화시킬 수 있는 措置適用</li> <li>• 1996년까지 5~10% 減縮</li> <li>• 一部品目에 대하여는 輸入數量 制限適用 (11조 2C)</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6년까지 60% 감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TC強調: 許容對象 政策과 減縮幅 決定時 반영</li> <li>• 特別 Safeguard 強調</li> <li>• 開途國 優待: 最低 開途國에 대하여 履行期間 優待</li> </ul>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1~2000년까지 20% 削減</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關稅化 對象品目 10년간 (1991~2000년) 20% 削減</li> <li>• 關稅化 除外品目 - 乳製品, 쇠고기, 돼지고기, 양, 염소고기, 설탕, 과일, 菜蔬, 穀物, 감자, 백포도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간 30%</li> </ul>	

理에 따라 各國은 任意와 自意性에 따라 現況 表와 計劃書를 제출하겠다고 公言하였다.

아직도 EC는 내부적인 意見調整의 실패로 수입자유화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主要國의 補助金 減縮計劃과 自由化 計劃書의 內容을 보면 <表 3>과 같다.

나. 우리 나라 CL 및 OL 提出

우리 나라는 CL이 일단 제출되면 대외적인 신뢰 차원에서 수정이 곤란하고 他締約國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 및 설명의 의무가 있어 결국은(initial offer)의 성격을 띠는 점을 감안하

여 작성 제출하였다. 우선 國內補助金 감축 분야에서는 AMS 計測對象을 쌀, 보리, 콩, 옥수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牛乳, 鷄卵, 菜蔬類, 果實類, 그리고 기타 등 12개 품목으로 국한하였다. 그리고 減縮對象 政策으로는 市場價格支持, 直接支拂, 일부의 要素補助에 국한시켰으며 農業機械化, 一般 서비스, 災害補償, 構造調整政策 등은 許容對象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실제 減縮對象 補助金은 NTC를 고려하여 계란에 대해서만 표시하였다.

다음으로 國境措置 緩和에서는 關稅相當值(TE)算出 對象品目으로서는 NTC 對象品目과 計算不能品目 등 137개를 제외한 輸入制限 品目과 1986~90 開放品目を 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 나라는 수차례에 걸친 논란 끝에 1990년 10월 29일 OL을 公式提出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우선 國內補助金 감축은 價格支持 및 品目特定的인 投入財補助에 한하여 감축하고 AMS를 통하여 1997년부터 10년간 30%를 감축하되 開途國에 대해서는 構造調整에 필요한 6년간의 猶豫期間을 허용할 것 등으로 되어 있다. 許容對象 政策은 開途國의 農業 및 農村發展과 관련된 政策, 農產物市場 開放過程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構造調整政策, 食糧安保 등 NTC 목적 달성에 필요한 最小農業 維持 목적의 政策 등이다.

國境措置 部門에서는 關稅化를 원칙적으로는 수용하되 NTC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품목과 GATT 11조 2(C)항 適用對象 品目は 關稅化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關稅化 對象品目の 關稅化 방법으로는 1991년부터 7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 나가되 關稅 相當額은 關稅化 轉換年度부터 10년간에 걸쳐 최대한 30% 정도 감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最小市場接

近을 보장하되 初期 關稅割當量은 1991년부터 1986~88년 평균수입량을 기준으로 하고, 수입 실적이 극소한 품목의 경우 國內 평균소비량의 1%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關稅化 과정에서 수입 급증으로 인한 國內農業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數量規制措置가 허용되는 緊急輸入 規制措置가 제도화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輸出補助 部門에 대해서는 CL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議長草案에 명시된 輸出支援事項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減縮約束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補助金의 감축과 관세화 과정에서 NTC 대상으로 선정된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로 되어 있다.

#### IV. 向後 協商의 展望과 韓國 農業에 미치는 影響

##### 1. 協商展望

農產物協商에서 美國과 함께 協商主導力上 쌍벽을 이루고 있는 EC가 補助金 現況表(CL)와 減縮計劃書(OL)를 提出時限을 훨씬 넘기고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기한내 協商安結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EC는 1990년 10월 28일 會員國間의 頂上會談을 열고 CL과 OL 제출을 논의하였으나 영국과 네덜란드만 찬성했을 뿐이며, 그 후 10월 30일 外務·農務長官 연석 회의는 會員國間의 異見으로 끝내 무산되었다.

11월 3일부터는 GATT에서 TNC 회의가 있을 예정이나 이번이 없는 한 OL의 제출은 기대난망인 상태이며, 12월 2일로 예정되어 있는 統一獨逸 總選까지는 어떠한 協商案도 제출치 못할 것이라고 예상들하고 있다.

EC는 애초에 協商에 임하면서 일부 農産物의 과잉생산과 그로 인한 財政赤字의 문제가 심각해져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즉, 외부의 힘을 빌려 자연스럽게 내부의 문제를 풀어 나간다는 기본입장이었으나 그들이 시행하고 있는 共同農業政策(Common Agricultural Policy)의 근간을 뒤흔드는 輸入自由화와 輸出補助金の 감축에는 완강히 반대해 왔다. 특히, EC는 미국으로부터 비난의 표적이 되어 온 變動輸入賦課金制度(Variable Levy System)는 條件附로 關稅化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으나, 輸出補助金を 급격하게 감축하자는 주장에는 난색을 표명하였던 것이다. EC는 農産物 輸出國家인 미국이나 케언즈 그룹에 비하여 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 과잉생산된 農産物의 輸出補助金 지급이 금지되었을 경우 심각한 在庫累増과 財政赤字의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이나 케언즈 그룹은 輸出補助金 완전 철폐에 따라 市場占有率이 높아지는 측면보다는 輸入國들의 非關稅障壁이 철폐됨으로써 輸入需要가 크게 증대되고 많은 農産物을 수출할 수 있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農産物 輸出國家의 입장에서 輸入國家의 非關稅障壁으로 輸入物量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價格傳導(price transmission)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계적인 價格波動이 증폭된다고 비난하여 왔다. 현시점에서 美國과 EC의 의견조정 은 어려워 보이지만 妥協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은 EC가 주장하는 國內補助, 國境措置, 輸出補助 등을 포함하여 총체적인 AMS를 줄여 나가는 案(global approach)을 수용하는 대신 EC는 이와 같은 AMS 감축률에 있어서 양보를 하는 것으로 타결될 전망이다. 즉, 총체적인 AMS를

감축해 나가되 減縮率은 EC가 주장하는 線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모든 非關稅措置의 철폐와 國內補助金の 감축은 기정사실화되고 이 과정에서 韓國이 주장하는 NTC에 의한 例外措置는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반영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NTC를 주장하는 수입국간에도 관심사항 및 保護品目에 차이가 있어 共同步調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여 農産物 그룹 議長과 미국 등이 예외 품목 설정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로 4년여를 거쳐 논의해 온 農産物協商은 지연될 것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으나 결렬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UR 全體協商의 成敗는 農産物 協商結果에 크게 좌우되고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의견조정이 이루어져 타결될 것으로 보이며, 이 때 農産物 貿易은 대폭적으로 자유화되고 개혁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다.

### 3. 우리 農業에 미치는 影響

韓國은 상대적으로 先進國에 비하여 國境保護措置로 인한 農業補助의 비중이 매우 큼을 감안할 때 關稅化와 關稅 相當額의 감축은 農家所得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품목별로 農家補助를 政府財政에 의한 國內補助와 國境保護措置로 인한 농가보조로 구분하여 표시하면 <表 4>와 같다.

<表 4>와 같이 政府財政을 통한 農家補助는 2~7%에 해당되며, 쌀의 경우에만 收買政策으로 12%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의 UR 農産物協商에서 韓國은 政府補助 감축보다는 關稅 相當額(TE)의 감축이 國內農業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關稅 相當額이 계속 감축되는 과정에서 그만

表 4 主要 品目別 補助類型 (1988년 기준)

단위: 백만원

	쌀	보리	콩	옥수수	쇠고기	돼지고기	채소	과일
I. 市場價格 支持	4,703,979	278,982	194,888	26,977	526,332	447,203	-	-
II. 投資財 補助	14,577	2,307	2,120	73	919	1,731	7,572	2,613
III. 一般서비스	647,696	16,172	6,294	217	96,332	21,766	109,547	7,315
IV. 總補助 (AMS)	5,366,252	297,461	203,302	27,267	623,583	470,700	117,119	9,928
V. 政府財 政補助 (II + III)	662,273	18,479	8,414	290	97,241	23,497	117,119	9,928
VI. (V/IV)	0.123	0.062	0.041	0.011	0.156	0.0499	-	-

資料: 韓國農村經濟研究院, 「UR 協商資料」, 1990. 11.

금 경쟁력 향상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國內 農產物 生産基盤 維持가 어려울 것이며, 또한 國際 農產物價格의 불안정이 그대로 국내에 전가되어 국내 농산물가격의 파동이 빈발할 우려가 있다.

關稅 相當額이 30~40% 감축될 경우 농가소득 피해액은 주요 40여 개 농산물을 완전히 輸入開放했을 때의 被害額 5조 4천억원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9년 研究資料: 1988년 기준) 인 점과 農產物 供給曲線이 右上向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5조 4천억원의 절반에 해당되는 2조 7천억원(1988년 農產物 總生産額: 13조)쯤으로 예상된다.

이 액수는 일시에 감축하는 것은 아니지만 最終年度와 1988년과의 農家所得과의 차액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國內農業 支援政策이 점진적 감축대상이 되고 있는데, 1988년 기준으로 이와 같은 보조금은 1조 4백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다. 國內補助의 감축으로 우선 예상되는 문제점

은 農業投資가 대폭적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점이다.

농업 부문의 평균 자본수익률은 6~8%(韓國農村經濟研究院 推定)로서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利差報償支援이 중단될 경우 농민에 의한 農業部門 投資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輸入開放에 대응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規模의 經濟 및 農業機械化의 달성이 필수적이나 農機械 購入補助가 없어질 경우 농기계 수요 감소와 農業機械化 정체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農業의 國際化·開放化에 대응하여 農產物輸出 增大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 輸出 有望品目에 대한 輸出補助金 지급과 海外 市場開拓 지원이 곤란해질 것이다.

더욱이, 農業部門의 生産要素인 土地와 勞動力, 資本設備는 부문간에 유동성이 매우 적은 것이 특징이므로 농산물 수입개방 후 資源의 遊休化 費用은 굉장할 것이며, 이에 따른 社會的인 불안정이 증폭될 것으로 본다.

## V. 對應方案

### 1. 農產物 協商對策

農產物協商이 외견상으로는 첨예한 理解對立으로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엇갈린 주장의 내용은 구체적인 減縮幅이나 減縮 履行方法들에 관한 것들이고 대강의 원칙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協商決裂을 짐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원칙에 대한 협상보다는 실질적인 關心國들끼리의 雙務協商만이 남아 있으므로 우리 나라가 주장해 온 NTC, 開途國 優待措置, 猶豫期間 許容 등에 관한 사항을 미국 및 케언즈 그룹과의 쌍무협상에서 효과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雙務協商時 현재 우리 나라가 提案하고 있는 15개 NTC 品目들을 양국의 協商利益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에서 조정해 나가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협상 분위기로 미루어 보아 많은 품목의 例外措置 許容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너무 NTC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의 이행기간, 유예기간, 감축방식 등에서 유연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여 關稅化가 무차별하게 실현될 경우에는 議長의 勸告內容에서와 같이 主要 品目에 대한 自由化 日程 연기, 減縮幅의 축소 등 품목별로 상이한 減縮公式를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國家別로 상이한 減縮原則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國內補助金 감축보다는 關稅化와 關稅 相當額의 감축이 더 중요하므로 輸入自由化에 관한 협상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

이다. 우리 나라가 제안한 OL은 이러한 측면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느낌이다.

關稅化 過程에서의 諸般 副作用과 衝擊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GATT XI조, XIX조, XX조의 적절한 修正과 補完에 최대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特別緊急輸入 制限制度(Special Safeguard)에서는 關稅增量뿐만 아니라 물량 규제도 가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雙務協商에서 상대방 요구의 예봉을 피하고 우리 農產物輸出의 증대를 위해서는 相對國家의 農業政策과 輸入制限, 國內補助政策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逆으로 韓國의 요구사항을 提案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國內 農業政策 方向

UR 農產物協商은 전례가 없는 世界의 農業改革과 市場指向의인 農產物 貿易體系의 수립에 관한 협상이다. 따라서 협상타결 이후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모든 締約國의 農業은 완벽하지는 못하나 國際化·開放化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농업정책 방향은 크게 변화되어야 하겠다.

우선 韓國農業이 國際化·開放化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國際分業과 比較優位 原理에 의한 專門化 방향으로 農業生產體系를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氣候나 自然與件에 맞을 뿐만 아니라 생산자원의 賦存與件에 맞는 土地節約的이고 資本과 技術集約的인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農業의 國際競爭力을 제고시키는 방법이다.

물론 作目體系 再調整에 따른 기술적인 미비 사항이나 生産基盤 造成 등에 대해서는 현재 UR에서의 減縮 履行期間이나 猶豫期間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少數 戰略品目으로의 生産轉換과 國內需要의 한계성으로 過剩生産과 價格暴落 事態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農產物 輸出戰略도 함께 수립해 나가야 되리라 본다. 따라서 UR 農產物協商에서 상대방에 대한 Request List의 신중한 제출이 요망된다. 이러한 방식의 作目體系調整이 필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다. 현재 議長 草案은 모든 補助金을 감축과 허용대상으로 분류하고 감축대상을 합의된 기간내에 일정수준으로 감축하며, 許容對象 政策도 1988년도 보조수준을 상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補助總額은 점차 감축해야 할 입장이나 감축방식은 EC의 總體的 감축이 수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우리 나라도 주어진 보조총액 한도내에서 보조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作目體系의 조정이 시급한 것이다. 이와 함께 NTC 관련품목에 대한 지원은 價格支持보다는 生産構造 및 基盤整備에 대한 補助로 전환하여 최소의 농업을 최소의 비용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은 農業의 國際化에 대응한 補完對策에 불과하므로 農家所得 損失의 발생은 不可할 것이다. 따라서 UR協商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대로 생산과 가격에 직접적인 連繫性이 없는 所得補轉政策(Decoupled Income Support Policies)이나 福祉政策의 擴充이 필요하다.

## VI. 要約 및 結論

현재 우리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農產物 輸入開放壓力은 팔기만 하고 사지 않을 없는 國際貿易의 논리에 따른 것이지만, 그 압력을 수

용하기에는 國內農業基盤이 너무 취약하다. 그리고 開放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미처 대응할 政策手段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韓國農業의 深刻性은 증폭되고 있다.

그동안 政府에서는 對外指向的인 經濟成長을 추구하면서 필연적으로 닥쳐올 農產物 輸入開放問題를 예견하지 못하고 충분한 補完對策마련에 소홀해 온 감이 있다.

오히려 不均衡成長 政策에 의하여 都農間의 소득과 생활 격차가 확대되어 온 것이다.

지금 UR 農產物協商은 參加國의 참여한 이해 대립으로 협상 연기가 조심스럽게 예상되고 있지만 全體 UR 協商安結의 關鍵이 되고 있으며, UR 協商 決裂을 극히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로 미루어 보아 어떠한 형태로든 타결될 전망이다. 더욱이 UR農產物協商은 그야말로 世界農業의 개혁과 自由貿易體系 수립이라는 야심적인 목표 달성에 접근해 나가는 방향으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야말로 風前燈火 상태의 農業을 되살려 내는 國民的인 合議가 있어야 할 때이다. 農業은 NTC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國際貿易에 의한 부정적인 所得再分配의 결과는 반대방향의 보상을 통하여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政府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